

와 맞지 않는다는 관련부처의 지적과 시·도의 건의에 따라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한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의 연장(규칙제36조의3)

과세전적심사의 청구기간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 이내로, 결정기간도 청구서 접수일부 터 15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이내로 각각 연장하였다.

19) 자동차 이전등록시 등록세 납부제도 보완(규칙제50조)

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도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종전의 지방세법령에서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시는 사용본거지 자치단체에서 OCR납부서를 발급 받아 은행 등에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타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번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0조를 개정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도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제53호의2 서식에 의하여 수기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동일 시·도내에서는 어디서나 자동차이전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 경주·마권세의 안분기간 조정(규칙제57조)

시행령 제105조의2 규정에 의거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에 대한 경주·마권세액의 안분에 있어 경륜·경정·경마장이 신설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